

## 자동차소유권이전(상속)등록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 광진구청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상속)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20. 11. 25. ~ 2020. 12. 10.
3. 공시송달 대상자 : 35러82\*\* 정\*영 외 6건(명단별첨)  
※ 상속개시일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4.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 소유자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하셔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운행 중일 것으로 추측되나 소재불명 시 상속인이 운행정지명령 요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이전(상속)등록 시 필요서류(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3) 상속포기서(양식첨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중 이전등록 받을 상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 신분증 사본 첨부 못할 경우→ 상속포기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 자동차등록증
- 5) 상속자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6) 상속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 본인 신분증  
상속자 대리로 신청할 경우 : 상속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고기간 : 2020.11.25. ~ 2020.12.10.

순번	대상자	물건	기본주소	상세주소	비고
1	정*영	35려8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8길 *(구의동)		
2	서*장	서울52마59**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4길*(화양동)		
3	곽*옥	15거5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2길 *(구의동)		
4	오*환	57나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6길 *(중곡동)		
5	김*운	86소8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4나길 *,	*동 *호(군자동)	
6	김*정	서울54마30**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정왕동,*)	*동 *호	상속인
7	서*영	46노96**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10길 *(능동)		상속인